

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요령 안내

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6. 4. 29. 결정·공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결정·공시

- 공 시 일 : 2016년 4월 29일
- 공시내용 : 개별주택가격(건물·토지 일체가격)
- 열람장소 : 주택가격 열람사이트, 구청 홈페이지, 세무1과, 소재지 동주민센터
 - 광진구 홈페이지 : **광진구 부동산포털사이트** <http://land.gwangjin.go.kr/>
 - 국토교통부 : **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** www.realtyprice.kr

○ 이의신청

- 기 간 : 2016년 4월 29일 ~ 5월 30일
- 제출사항 : 결정·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 가격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신청가격 제시
- 제 출 자 :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
- 제 출 처 : 주택가격 열람사이트, 구청 홈페이지, 세무1과, 소재지 동주민센터
- 제출방법 : 제출처에 비치되어 있는 『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』 작성 제출
(소유자인 경우 주택가격 열람사이트,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제출 가능)
 - 이의신청 : **일사편리** <https://kras.go.kr:444/tcmngcpm/cafAffairsList.do>

○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
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

※문의처 : 광진구청 세무1과 (☎ 02-450-7412~3)

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

공동주택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

- 『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』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에 대하여 2016.1.1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
- 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

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

- 2016. 4. 29 ~5. 30(32일간)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장정보 앱 및 시·군·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.
 -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(읍·면·동)에 비치되어 있는 「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」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의신청서 제출시 성명, 주소,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.
- (문의처) 공동주택가격 콜센터(☎ 1644-2828)

제출된 의견은

-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.
- (인터넷 제출의견)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(6. 24~6. 29)
- (서면 제출의견) 개별회신(6. 24)